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91

발의연월일: 2025. 5. 23.

발 의 자: 허성무·김동아·이재관

임오경 · 임미애 · 서미화

이언주 • 박선원 • 조인철

정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 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.

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,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 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,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.

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,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6호의 2 및 제18조의2 신설).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18조의2에 따른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1항제1호 중 "따른 공공기관"을 "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에너지 교육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가치의 중요성,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,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・운영
 - 2. 국민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ㆍ배포

- 3. 에너지 관련 교육교재, 웹사이트, 영상자료 등의 기획 · 제작
- 4. 에너지 분야 교육 강사의 양성 · 보급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교육 관련 사업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	제10조(위원회의 기능)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의2. 제18조의2에 따른 에너지</u>
	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	에 관한 사항
7. ~ 11. (생 략)	7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에너지기술 개발) ① 관계	제12조(에너지기술 개발) ①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	
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	
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	
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	
있다.	.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	1
법률」 제4조에 <u>따른 공공기</u>	<u>따른 공공기</u>
<u>관</u>	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
	<u>다)</u>
2. ~ 12. (생 략)	2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에너지 교육) ① 산업
	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가치
	의 중요성 에너지 적약 및 호

- 율 향상,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- 1.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·운영
- 2. 국민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・

 배포
- 3. 에너지 관련 교육교재, 웹사 이트, 영상자료 등의 기획・ <u>제작</u>
- 4. 에너지 분야 교육 강사의 양 성·보급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교육 관련 사업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출연할 수 있다.